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3일 18시 37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	3

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

2014.04.17 조회수 71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03
담당부서	건축과
상위법령	건축법 제11조
조례	여수시 건축 조례 제18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9-10-23
규제시행/폐지일	1999-10-23
규제내용	제18조(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)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(이하 “예치금”이라 한다)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.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02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0 >

Yeosu Web Contents

